

의안번호	제 357 호
의결년월일	1996. 7. 5. (제 45 회)

의결 사항	원안
	가결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6. 5. 30.

고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7
------	-----

제출연월일 : 1996. 5. 30.

제 출 자 : 고성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95조(법률 제4789호, '94. 12. 20)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부위임 규정의 법적근거 상실로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던 군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권한위임코자 함.

2. 주요골자

-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에 따라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고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군 및 타읍면의 중계 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권 한 위 임 사 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 고
문 화 공 보 실	1. 공연신고	공연법 제14조 제1항	
내 무 과	1.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읍면내 전보 2. 소속공무원 전·출입 제청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5.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7. 문서의 보존 및 폐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재 무 과	1. 군세징수 2.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3. 관내공공시설과 재산관리 4.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고성군세조례 제6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사 회 복 지 과	1.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2.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 3. 매장·화장·개장신고 4.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5.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6. 음식업영업(폐업·재개업) 허가 7. 여인숙 영업신고 8. 여인숙 휴·폐업 신고 9. 이·미용업 신고	생활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 고
사 회 복 지과	10. 이·미용업 휴·폐업 신고 11. 식품영업관련 출입·검사·수거 등 12.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13. 식용얼음 판매신고 14. 집단급식소 신고 15. 우유류 판매업신고 16. 영업자 지위승계 17. 식품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읍면 허가·신고분에 한함) 18. 식품및 공중위생업소 청문에 관한사항 (읍면 허가·신고분에 한함) 19. 세탁영업신고 관리 20.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장애인 등록신청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17조 공중위생법 제20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공중위생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5조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법 제2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과	1. 인분비용 사용금지 지도단속 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관리운영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도·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제외) 5. 우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군허가대상외 건축물) 6.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0조 고성군청소종사원봉무규칙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고성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 고
산림과	1.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및 제125조	
수산과	1. 어업신고	수산업법 제44조	
건설과	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지 역 개발과	1. 주택상환금 징수 2. 건축신고 3. 무허가 수도단속 4.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5. 가설건축물 신고 6.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 신고, 건축신고 범위내)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축법 제9조,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7조	
보건소	1. 대마취급자의 허가 2. 대마제배자의 보고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 대마관리법 제7조	

군및타읍면중계민원담당관의위임사무

군 발 급 민 원	면 발 급 민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토지대장등본 (4) 임야대장등본 (5) 지적도등본 (6) 임야도등본 (7)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8) 환지에정지증명 (9) 도시계획확인원 (10) 공장등록증명 (11) 하자보수 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2) 물품공급거래 실적증명 (13)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증명 (14)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15) 징수유예 증명 (16) 납품실적 증명 (17) 공사실적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세민(생보자) 증명 (2) 납세완납증명 (3) 마과세 증명 (4) 세목별 과세증명 (5) 세목별 납세증명 (6) 토지가격 확인원